

2013년 ~ 2017년  
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

# 2013년 ~ 2017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에 따라 “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”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함

## □ 기본방침

-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
-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
-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

## 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

## □ 개 요

- 작성기준일 : 매년 1월 1일
- 계획기간 : 5년간(2013년부터 ~ 2017년까지)
- 주요내용
  - 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· 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  -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  -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  - 민간 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

## □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
### ①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

년도	증감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사업소	읍	면
					농업기술센	보건소			
기 준 (2012년말)		652	272	14	62	64	54	38	148
2013년	4	656	281	14	62	63	50	38	148
2014년	4	660	285	14	62	63	50	38	148
2015년	2	662	287	14	62	63	50	38	148
2016년	1	663	288	14	62	63	50	38	148
2017년	-	663	288	14	62	63	50	38	148

### ② 직종·직급별 인력 운용계획

년도	합계	일 반 직								기 능 직					별정	지도	연구	정무
		소계	4급	4~5급	5급	6급	7급	8급	9급	소계	6급	7급	8급	9급				
기 준 (2012년말)	652	560	1	3	33	151	172	144	56	57	6	14	10	27	1	27	6	1
2013년	656	569	1	3	33	152	172	145	63	52	6	14	9	23	1	27	6	1
2014년	660	573	1	3	33	152	175	145	64	52	6	14	9	23	1	27	6	1
2015년	662	575	1	3	33	152	176	146	64	52	6	14	9	23	1	27	6	1
2016년	663	576	1	3	33	152	177	146	64	52	6	14	9	23	1	27	6	1
2017년	663	576	1	3	33	152	177	146	64	52	6	14	9	23	1	27	6	1

### ③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

구 분	인 력 증 원					
	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합 계	11	4	4	2	1	
기획조정						
행·재정			1 (지적조사)	-1 (일반행정감)		
문화체육관광						
보건복지	5	4 (사회복지3, 청소년수련관)	1 (사회복지)			
산업경제						
환경관리	2			1 (석면관리등 업무신설)	1 (기축분뇨 처리장)	
도시주택						
지역개발	4		2 (경관테마랜드 고향의강조성)	2 (농촌개발사업 백두대간생태 교육장)		
소 방						
방재·민방위						
의 회						
읍면동						

### □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

#### ①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책정

- 목적 :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필요
- 정원책정 : 4명

연도	계	일 반 직							기능직	지도직 연구직	비고
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
계	4명	4						4	0	0	
2013	3	3						3			기반영
2014	1	1						1			

## ②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책정

### ○ 청소년수련관 운영

- 위 치 : 거창군 가지리 일원
- 운영기간 : 2013년 ~
- 운영내용 :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,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, 저소득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### ○ 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

- 사업위치 : 거창군 마리면 장백교 ~ 북상면 갈계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6년
- 사업비 : 235억원(국비 141, 도비 47, 군비 47)
- 사업내용 : 하천정비 L=10.0km

### ○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

- 사업위치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, 남하면 무릉리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5년
- 사업비 : 286억원(국비 40, 도비 200, 군비 46)
- 사업내용 : 990천 m<sup>2</sup>(자연환경체험공원 814천m<sup>2</sup>, 교육·체험관 63천m<sup>2</sup>, 친환경체육시설 113천m<sup>2</sup>, 자전거누리길 L=40km)

### ○ 지적재조사 사업

- 사업위치 : 거창군 일원
- 사업기간 : 2013년 ~ 2030년
- 사업비 : 65억원(국비 65)
- 사업내용 :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

### ○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
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9년
- 사업비 : 187억원(국비 131, 도비 19, 군비 37)
- 사업내용 : 삼봉산권역, 남상면소재지, 신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

## ○ 목재문화체험장 및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

- 사업위치 : 거창군 고제면, 위천면 일원
- 사업기간 : 2012년 ~ 2015년
- 사업비 : 152억원(국비 92, 도비 28, 군비 32)
- 사업내용 : 부지면적 10,000m<sup>2</sup> 건축면적 4,000m<sup>2</sup>

## ○ 환경보건분야 신규업무 신설

- 신설법규 : 석면피해구제법, 석면안전관리법, 빛공해방지법, 환경보건법, 실내공기질관리법
- 업무기간 : 2013년 ~
- 업무내용 : 공공건축물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지도감독, 슬레이트주택 조사와 철거지원, 빛공해방지법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 환경공해에 따른 국민 건강관련 업무 대폭 증가

## 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운영

- 사업위치 : 거창군 양평리
- 사업기간 : 2013년 ~ 2017년
- 사업비 : 160억원(국비 128, 도비 6억, 군비 6억, 환경부낙동강수계 기금 20억)
- 사업내용 : 양돈분뇨 정화 공공처리(1일처리용량 95톤)

○ 정원채정 : 8명

구분	연도	계	일 반 직							가능직	지도직 연구직	비고
		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		
계		8명	8				5	3				
청소년수련관 운영	2013	1	1					1			보건지 보	
거창 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	2014	1	1				1				지역 개발	
거창 경관테마 랜드 조성사업	2014	1	1				1				지역 개발	
지적재조사 사업	2014	1	1				1				행·재 정	
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	2015	1	1				1				지역 개발	
목재문화체험장 과 백두대간 생 태교육장 조성	2015	1	1				1				지역 개발	
환경분야신규 업무	2015	1	1					1			환경 관리	
가축분뇨 공 공처리 시설 설치와 운영	2016	1	1					1			환경 관리	

□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
○ 세입규모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비고
계	411,935	430,254	435,449	452,482	464,723	
지방세수입	18,231	18,588	18,963	19,354	19,741	
세외수입	57,275	57,611	58,872	59,861	60,519	
의존재원	336,430	354,055	357,614	373,266	384,463	

○ 인력운영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3	2014	2015	2016	2017	비고
인건비	48,424	51,436	53,816	56,091	59,344	

□ 민간 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 : 해당없음

## 관 련 법

#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9>

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2.6.29>

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
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公社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